

大田直轄市郷土史料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이 條例案은 1992. 3. 30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 4. 1.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음.

1. 提 案 理 由

우리 市 歷史考證 資料와 傳統文化藝術, 民俗遺品 資料를, 蒐集 展示 管理하고, 所藏品の 保管 陳列 및 修理等의 特殊業務를 遂行 하고 있는 郷土史料館 常任委員의 士氣를 振作시키고 業務 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爲해 任期를 1年 더 延長하며, 報酬도 우리 市 의 市史編纂委員會 常任委員 水準으로 改善하여 郷土 史料館을 效果的으로 管理 運營코자 함.

2. 主 要 骨 子

가. 郷土史料館 常任委員의 任期를 1年에서 2年으로 延長함.
(案 第6條 第2項)

나. 常任委員의 報酬를 우리 市 市史編纂委員會 常任委員水準 으로 調整하여 處遇를 改善하려는 것임 (案 第6條 第3項)

3. 檢 討 意 見

本 改正 條例案은 우리 고장의 歷史考證資料와 함께 傳統文化 藝術 및 民俗遺品 資料를 募集展示管理하고, 또한 所藏品の 保管 陳列과 修理等 特殊業務를 遂行하고 있는 郷土史料館 常任委員의 現行 任期를 延長함과 同時 그 處遇를 他 委員會의 常任委員 水準과 均衡을 維持하고자 하는 事案임.

改正되는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現行 郷土史料館 常任委員(1名)의 任期를 1年에서 2年으로 延長 하고 報酬를 市史編纂委員會 常任委員 水準으로 調整하여 處遇를 改善하려는 案이 되겠음.

이는 郷土史料館 管理의 專門性 提高面에서 볼 때 事業의 特殊性和 持續性이 연계되어야 效率的인 事業 推進이 될 것으로 보아 本件 改正案의 內容은 妥當한 措置라 思料됨.